

오픈소스 라이선스 간 양립성 충돌 문제 조항과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GPL 라이선스를 중심으로 -

2024.08.13

텔레칩스 R&D Innovation Team

연지영 매니저

Table of Contents

- 01. 서론
- 02.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 03.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의 법적 쟁점
- 04.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 주요 원인
- 05. GPL 양립성 충돌의 문제 조항과 판단 기준
- 06. 결론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이란?

상호 모순되는 라이선스의 코드, 파일, 라이브러리 등을 두 개 이상 결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소프트웨어 공학적 으로는 가능하나 라이선스 정책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

GPL 2.0



Apache 2.0

연구의 목적

(문제 원인)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 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문제 제기)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제공하는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 정보 외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양립성 충돌 여부 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합의된 기준이 부재하여 판단 결과 가 제각각일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연구 요약) 이에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이 발생하는 이 유를 분석하여 규칙성을 발견하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간 양립성 충돌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함

CONFIDENTIAL

02.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오픈소스 커뮤니티

- 신규 버전의 라이선스 발표 (예: BSD 4-Clause → BSD 3-Clause)
- 특정 라이선스와 병행 허용 (예: GPL 3.0 ↔ AGPL 3.0)
- 특정 라이선스로 대체 허용 (예: MPL 2.0 → Secondary License)
- 듀얼 라이선스 정책 허용 (예: FFmpeg, GPL 2.0 / LGPL 2.1)

오픈소스 재단

- 리눅스 재단,「Open Source Compliance in the Enterprise」
 -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을 라이선스 준수의 실패 사례 중 하나로 설명하면서, 양립성 충돌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 제시
- 자유소프트웨어 재단, 「Various Licenses and Comments about them」
 - GPL과 호환 / 충돌하는 라이선스 리스트와 함께 사유 제시

정부

- 미국, The Department of Defense Chief Information Office (FAQ)
- Rades, Joinup Licensing Assistance Compatibility Checker
- 한국, 한국저작권위원회(OLIS),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공개SW 포털)



오픈소스 라이선스 간 양립성 충돌이 발생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채권 계약을 위반하는 것일까?

오픈소스의 저작물성

오픈소스 저작물의 유형

오픈소스는 소스코드를 공유한다는 정책으로 유형화 되어 있을 뿐, 컴퓨터프로그램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음 즉, 오픈소스일지라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개발 유형	저작물 유형	저작권 소유자	비고
개발자 단독 개발	단독 저작물	개발자가 단독으로 저작권 소유	
다수 개발	공동 저작물 (기여 부분 분리 이용 불가)	개발자 다수가 저작권 공동 소유	침해행위에 대한 정지 청구, 손해배상은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단독 청구 가능
	결합 저작물 (기여 부분 개별적 이용 가능)	기여 부분에 저작권 개별 소유	
새로운 저작물 개발	2차적 저작물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저작권 소유	원저작권자와 분리하여 단독으로 저 작권 행사 가능

동일한 소스코드에 여러 개발자가 수정 또는 개선하는 오픈소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며, **불특정 다수가 반복해서 기여하는 오픈소스는 결합 저작물이 아닌 공동 저작물로 보는 것이 저작권 행사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됨**

단, 공동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원저작물과는 다른 새로운 저작물을 완성하게 된다면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질

제46조(저작물이 이용허락) ①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 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 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책임

저작권 계약 VS 채권 계약

- 미국 법원은 여러 차례 라이선스를 저작권 계약으로 인정함 (예: Jacobsen v. Katzer)
- 우리나라 범에서도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저작권 계약으로 볼 수 있음**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서 저작물의 구체적인 이용허락 범위는 이용 방법 및 이용 조건에 의해 결정

- 이용 방법: 저작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각 재산권 영역의 권리
- 이용 조건: 이용 부수, 이용 횟수, 이용 기간, 이용 장소, 이용 형태 등
 - ※ 계약상의 이용 방법이나 이용 조건과 맞지 않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음

일반적으로 판례는 라이선스 위반으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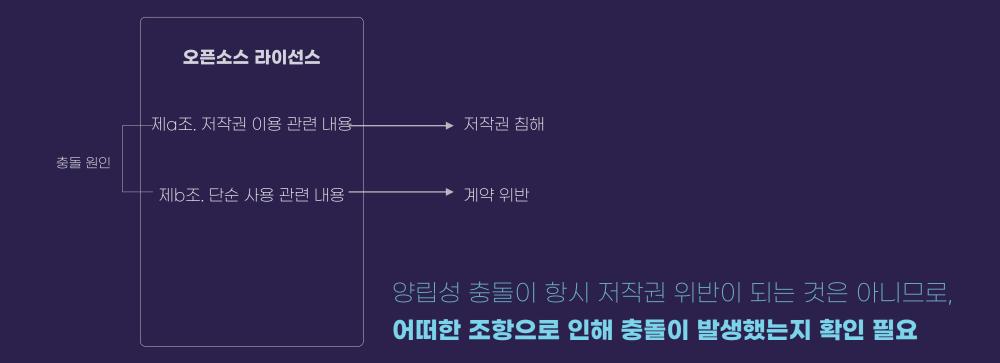
- 위반 행위가 저작재산권의 권리와 관련되는 이용인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 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사용인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계약 위반에 해당

이용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저작권의 지분권에 관한 행위
사용	저작권법에서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형태로 저작물의 내용을 향수하는 행위

양립성 충돌의 책임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의 한 유형

- 양립성 충돌로 인해 위반하게 된 행위가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이용인 경우 저작권 침해
- 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사용이라면 계약 위반



04. 오픈소스 라이선스 양립성 충돌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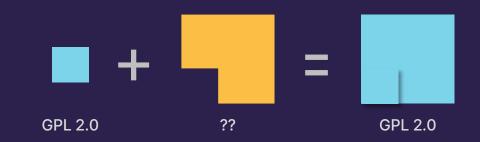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제2조 카피레프트 조항

카피레프트 조건이란 오픈소스 저작물이 동일한 라이선스 하에 지속 해서 재배포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2조. 당신은 프로그램의 복제본 전부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원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아러한 수정본이나 저작물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

- b)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 받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리를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제3자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허용해야 한다.
- ··· 저작물 전체의 배포에 대해 본 라이선스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부분들을 누가 작성했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가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된다. ···



제6조 추가제한금지 조항

라이선스 수취자에게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권한 이용에 추가적 제한이 되는 이용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4조 라이선스 종료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는 복제와 수정 및 서브라이선스 설정과 배포등의 행위는 전부 무효하며, 라이선스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카피레프트 정의

Richard Stallman의 Copyleft 정의와 라이선스 분류

- Lax License (허용적 라이선스) 모든 라이선스와 조합이 가능한 라이선스
- Intermediate License (중간 라이선스) 독점소프트웨어와 결합이 금지되지 않으나추가적인 조건이 부여되는 라이선스
- Copyleft License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독점 소프트웨어와 결합이 금지된 라이선스

License Compatibility and Relicensing

y Richard Stallma

If you want to combine two free programs into one, or merge code from one into the other,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ir licenses allow combining them, or prohibit combining them.

There is no problem merging programs that have the same license, if it is a reasonably behaved license, as nearly all free licenses are [2]

What then when the licenses are different? In general we say that several licenses are compatible if there is a vay to merge code under those various (licenses while complying with all of them. The result, often, is a program with parts under various different compatible (licenses—but not always. Such combinability, or the absence of it, is a characteristic of a given set of licenses, and is not dependent on what order you mention them in. The set of licenses also controls which license is required for the combined program.

We divide licenses into three classes: lax (also "permissive" or "pushover"), intermediate, and copyleft. A lax license does nothing to interfere with putting the code into proprietary software.

a whole carries the copyleft license. One lax license, Apache 2.0, has patent clauses which are incompatible with GPL version 2; since I think those patent clauses are good, I made GPL version 3 compatible with them.

n a combination of programs under lax licenses, each part carries the license it came with. When the code is merged to the point that the parts can't be distinguished any more, that merged code should carry all the licenses of the merged parts. Since all the licenses are lax anyway, this causes no practical problem except that the list of licenses gets long[3]

By the same token, lax licenses are usually compatible with any copyleft license. In the combined program, the parts that came in under lax licenses still carry them, and the combined program as a whole carries the copyleft license. One lax license, Apache 2.0, has patent clauses which are incompatible with GPL version 2; since I think those patent clauses are good, I made GPL version 3 compatible with them.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분류 재정의

- Strong Copyleft License (강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2차적저작물에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을 요구하는 라이선스 예) GPL, MPL, EPL 등
- Weak Copyleft License (약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2차적저작물에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해도 되지만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라이선스
 예) Apache 2.0, BSD 4-Clause
- Non-Copyleft License (비(非)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카피레프트 조항이 없어 다른 라이선스로 변환하는 것에 제한 없이 자유 로운 라이선스 예) MIT, BSD 3-Clause, BSD 2-Clause

CONFIDENTIAL

05. GPL 양립성 충돌의 문제 조항과 판단 기준

카피레프트 조항으로 양립성 판단



예) GPL 2.0 + MPL 2.0 = 충돌

단, MPL 2.0은 부차적 라이선스 대체 적용을 허용하여 GPL 2.0과 호환

예) GPL 2.0 + Apache 2.0 = 충돌

Apache 2.0의 특허실시허여 조항으로 인하여 충돌함

- 강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약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조항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 충돌하지 않음
- 강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약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조항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추가제한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충돌함

양립성 충돌에 무의미한 의무사항

1.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의 오픈소스 정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인정받기 위한 10가지 기준은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모두 갖추고 있는 조건이므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지 않음

2. 저작권 및 기여자 고지사항 유지 및 수정 고지

저작인격권에 대한 조항으로, 이 조항이 부재한다고 하여 저작권 및 기여자의 고지 사항 유지 또는 수정 내용 고지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므로 추가제한금지 조건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 충돌이 일어 나지 않음.

3. 성명, 상표, 상호 사용 제한

오픈소스라 할지라도 상표권을 사용하려면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함. 따라서 상표권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조항은 충돌을 발생시키지 않음

4. 보증책임 면책

보증 부인 및/또는 면책에 대한 조항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무보수로 제공되는 오픈소스 특성상 보증책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음

양립성 충돌에 유의미한 의무사항

1.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 방법, 대상 등을 제한하는 라이선스는 오픈소 스 라이선스가 아니며 GPL과 양립할 수 없다.

예) 소스코드 독점 소프트웨어(Closed-Software)

: 복제 전송 배포 등의 권리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락

단, 독점 소프트웨어일지라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하에 소스코드를 공 개할 수 있다면 양립성 충돌이 발생하지 않음

2. 원본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라이선스

수정본과 함께 원본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양립할 수 없다.

- 예) 원본(Original)과 수정본의 소스코드를 수취인에게 제공
- LaTeX Project Public License 1.3a
- LaTeX Project Public License 1.2

3. 일반 공중에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라이선스

일반 공중에 공개해야 하는 조건은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사용 제한이될 수 있으므로 양립할 수 없다.

예) Sybase Open Watcom Public License 1.0 제2.2조 (c) "본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배포된 모든 수정 버전의 소스코드를 공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포된 수정 버전의 소스코드는 가급적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와 같이 전자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4. 특허실시허락과 특허보복조항이 있는 라이선스

특허의 자유로운 실시를 허락하는 조항은 추가제한금지에 해당하여 양립할 수 없다. 단, FSF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에 부합하여 GPL 3.0은 호환하도록 개정함.

예) Apache License 2.0

양립성 충돌에 유의미한 의무사항

5. 명시적 승낙을 요구하는 라이선스

이러한 조건은 일반 FTP(File Transfer Protocol) 사이트를 통한 소스코드 배포, 일반 메일링 리스트(mailing-list)로 패치 발송, 일반 버전 제어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위반으로 만든다. 즉, 일반적인 개발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어렵게 하므로 양립할 수 없다.

예) Open Software License 3.0

제9조 "귀하는 수취인으로부터 본 라이선스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주어진 조건에서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2차적저작물에 특정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라이선스

기여자의 코드 기여 활동에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양립할 수 없다.

예) PHP License 3.01

제3조 "PHP와 관련한 이름의 사용을 금지한다"

7. 모든 광고 매체에 특정한 문구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라이선스

모든 광고 매체에 특정한 문구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라이선스와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광고에만 상당한 페이지가 필요해지므로, 이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예) BSD 4-Clause은 모든 광고 매체에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를 삽입하도록 규정
→ 이후 다른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의 출처를 자신의 기관 또는 이름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기관 또는 이름마다 라이선스 발생

8. 준거법이 명시된 라이선스

준거법을 특정하지 않은 GPL 라이선스 이용자 입장에서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은 추가적인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양립할 수 없다.

예) License of Python 1.6b1 through 2.0 and 2.1→ 버지니아주법

Condor Public License → 미국수출법

Common Public License → 뉴욕주법

CONFIDENTIAL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규정하는

이용 조건이나 방법은 저작권법상 항상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간 양립성 충돌은 언제나 저작권 침해로 귀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GPL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립성 충돌은

카피레프트와 추가제한금지 규정을 준수하는 데 실패하여 발생하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